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11
----------	-----

발의연월일 : 2009. 6. 22.

발 의 자 : 송재용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예상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과 갈등관리 조사·연구 및 갈등영향분석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바.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 다. 관련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실, 경영법무담당관실 협의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와 시민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 시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책의 추진배경
2. 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5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언론인
4. 시민단체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갈등조정전문위원회) ①위원장은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갈등조정전문위원회는 갈등조정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갈등조정전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당해 조정안건의 해결시까지로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주요 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실·국장, 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22일 송재용의원 외 9인
2.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22일
3. 상 정 일 자 :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6. 26)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송재용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예상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다.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과 갈등관리 조사연구 및 갈등영향분석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바.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17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대전광역시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발생시 조정·관리하기 위한 근거와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문 17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정의를,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 갈등영향분석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제15조에서는 갈등 관리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갈등영향분석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제16조부터 제17조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과 실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지방자치 도입 이후 주민권익신장 및 사회의 복잡·다원화, 환경 및 생태보전 등으로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와 주민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관련 우리시 주요시책 추진 시 갈등영향평가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발생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신뢰 향상이 기대되며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조례제정근거를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